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7. 7. 9.
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. 6. 15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7. 6. 18.

다. 상정일자 : 제129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위원회(2007. 6. 29)
상정, 심사, 보류
제129회 제1차정례회 제5차 위원회(2007. 7. 9)
상정, 심사,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이영복 주민생활지원과장)

가. 제안이유

○ 사회취약계층(청소년, 장애인 등)과 일반주민의 경제적 역량강화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○ 고용복지지원센터 사업에 관한 사항

여성, 청소년, 장애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을 수행 하도록 규정함 (안 제3조)

○ 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
여성, 청소년, 장애인 등을 주대상으로 고용 및 복지사업을 수행할

능력이 있는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4조)

○ 고용복지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

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5조)

○ 고용복지지원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

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(안 제10조)

3. 검토보고의 요지(김건재 전문위원)

○ 동 조례안의 제정은 일반주민과 여성, 장애인, 청소년 등 경제적 자립역량이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질 높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조성 및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.

○ 동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,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는 여성·청소년·장애인의 고용·복지 증진사업, 고용촉진·일자리창출을 위한 직업전문교육 및 취업알선 그리고 장애인 직업 재활에 관한 사업 등의 주요사업을 수행하고,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를 여성, 청소년, 장애인 등을 주 대상으로 고용 및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 센터운영에 팔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수탁자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회는 센터의 사업계획 및 평가, 센터 운영규정의 제정에

관한 사항 그리고 센터의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음.

○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「사회복지사업법」(2006.3.24 법률 제7918호) 제34조 및 「지방자치법」(2007.5.17 법률 제8453호)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, 마포구 지역사회 복지수요 현황(2006 마포구 지역복지계획)을 보면, 마포구 지역주민 중 기혼여성과 장애인은 취업, 직종개발, 창업 등 고용에 대한 욕구가 높고, 청소년의 경우는 학습시설, 직업훈련, 교육기관 및 문화체육시설의 확충 등의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, 주민의 시설이용 의향에 관하여는 취미, 여가를 위한 문화시설과 사회복지 및 직업교육, 취업 알선기관 등으로 조사되었음, 특히 저소득 여성이 원하는 복지 프로그램은 직업교육과 취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계층별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와 시설 확충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복지시설 및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어 향후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고용복지 지원 서비스 확대, 능력 개발 및 취업알선 등에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○ 본 조례안 제2조에 의하여 마포구 상암동에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여성, 청소년, 장애인의 고용·복지증진사업과 고용촉진·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전문교육 및 취업알선, 취미·여가활동·문화·교양교육사업 등 다양한 고용·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, 고용과 복지의 통합적 지원을 통해 자활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, 수급자로 전락할 수 있는 실업빈곤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경제력을 증진시키며,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응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자립을

유도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강화로 구민복지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, 조례안 제3조의 주요사업 중 여성·청소년 고용·복지 증진사업과 고용촉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알선, 취미·여가활동 등의 사업은 동일 건물 입주 예정인 '마포자활후견기관'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운영 또는 계획하고 있는 일부 프로그램과 동 후견기관 부설 '청소년자활지원관'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외계층 청소년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있어 동일 건물 내 상호 다른 기관의 유사한 고용복지 관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센터 간 취업 등 각종 정보교환이나 공간활용의 연계성,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가 어려워 제반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으며, 안 제3조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은 인근 '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'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신지체·발달장애 직업재활 프로그램과 유사한 사업으로, 직업재활 과정에서 심리치료, 사회적응훈련 및 맞춤형 체력증진 등의 프로그램을 병행하여야 하는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상사업 선정 및 위탁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바,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 타 :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
제안년월일 : 2007. 7. 9.
제 안 자 : 복지도시위원장

수정이유 및 주요내용

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 위탁의 취소 시 수탁자 의무위반의 사유로 취소되는 경우에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을 안 제11조제1항의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도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.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1조제2항 중 “제1항 제1호의”를 “제1항 각 호의”로 한다.

수 정 안 대 비 표

원 안	수 정 안
제11조(위탁의 취소) ① (생략) 1.~4. (생략) ②구청장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	제11조(위탁의 취소) ① (원안과 같음) 1.~4. (원안과 같음) ②---------제1항 각 호의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